



대한민국법원 QR코드

서울회생법원

제 1 4 부

등본입니다.

2026. 5. 6.



문 서 명

공매유찰 후 부실채권 수의매각 허가신청 합원주사보 김민정

사 건

2024하합101217 파산선고

채 무 자

주식회사 뷰티그램

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, 3층 304-12호(가산동, 신한이
노플렉스)

위 신청을 허가합니다.

2026. 5. 6.

재판장	판사	최 미 복	<u>전자서명완료</u>
	판사	정 승 진	<u>전자서명완료</u>
	판사	이 선 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
※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,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허가	불허가



법원용

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뷰티그랩
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의창

우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, 328호(여의도동, 여의도파라곤)
전화 02-786-8614 / 팩스 02-786-5213

문서번호 : 뷰티그랩 2026 - 5호

발송일자 : 2026. 5. 4.

받 음 : 서울회생법원 제14부

주심판사 : 정승진 판사님

제 목 : (공개 유찰에 따른) 부실채권 수의매각 허가신청

I. 귀원의 2024하합101217 사건 관련입니다.

II. 부실채권 수의매각 허가신청

1. 본 파산관재인은 아래 “가. 매각 채권의 내역” 에 표시된 채권의 환가를 위하여 2026. 3. 3. 귀원의 허가를 얻어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회차 개찰일까지 응찰이 한 건도 없어 유찰되었으며, 최종회차 개찰일의 최저 입찰가격은 5,000,000원이었습니다.

2. 그 후, 본 파산관재인은 부실채권 공개매각을 위한 공고 당시 최종회차 입찰기일까지 모두 유찰되는 경우 2026. 4. 30.까지 매수의향서 제출기한을 설정하였는바, 매수 의향 제출기한 내에 유일하게 매수의향을 제출한 (주)타임투자금융대부(대표자 김춘구)와 아래와 같이 위 채권의 수의매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 -

※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,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가. 매각 채권의 내역

채무자	금액(원)	채권의 종류	비고
한지희	856,793,770원	손해배상청구권	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25, 2024 고합 202(병합) 피고인임/ 동종 유사 혐의 병합 기소/특별한 재산 없고 신용상태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4. 1. 물품 제공 의사 표시로 선급금 명목 편취혐의로 기소(기소 피해액:856,793,770원)/형사판결 결과에 따라서 채권 존부 및 채권액 변경 가능성을 유의하시기 바람

나. 매각방법

수의매각

다. 매매계약 체결 내용

- (1) 계약명 : 부실채권 매매계약
- (2) 계약금액 : 금 360,000원
- (3) 매매대금 및 지급기한

매매대금(원)	지급기한
360,000	법원허가 후 3일 이내

- (4) 계약자 : 주식회사 타임투자금융대부(140111-0059095; 대표자 김춘구)
- (5) 참고사항: 매수의향서 제출 내역

순번	매수의향자	매수희망금액(원)	제출일
1	(주)타임투자금융대부	360,000	2026.4.29.

라. 기타사항



- (1) 이 건 수의계약은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함.
- (2) 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득할 경우 본 파산관재인은 위 계약자인 (주)타임 투자금융대부(대표자 김춘구)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완료된 후, 이 건 매각대상물을 계약자에게 이전할 예정입니다.

- 별첨 1. 매수의향서 사본 1부.
2. 부실채권 매매계약서(안) 1부. 끝.

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뷰티그랩
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의창

부실채권 등 채권 매매(양도·양수)계약서

매도(양도)인(갑)

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뷰티그랩(110111-7392527)의 파산관재인 김의창
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, 328호(여의도동, 여의도파라곤)

매수(양수)인(을)

주식회사 타임투자금융대부(법인등록번호 140111-0059095)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185번길 16-6, 4층(운교동)
사내이사 김 춘 구

위 당사자는 아래 양도양수 목적물에 관하여, (갑)은 (을)에게 아래 표시된 채권을 양도하고 (을)은 (갑)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매매(양도·양수) 목적물)

이 건 계약에 의한 매매(양도양수) 목적물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타임투자금융대부가 보유하고 있는 아래 표에 기재된 부실채권이다.

채무자	금액(원)	채권의 종류	비고
한지희	856,793,770원	손해배상청구권	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25, 2024고합 202(병합) 피고인입/ 동종 유사 혐의 병합 기소/특별한 재산 없고 신용상태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4. 1. 물품 제공 의사 표시로 선급금 명목 편취혐의로 기소(기소 피해액:856,793,770원)/형사판결 결과에 따라서 채권 존부 및 채권액 변경 가능성을 유의하시기 바람

제2조 (매매(양도·양수)대금 및 지급방법)

가. 매매(양도·양수)대금 : 금 삼십육만(360,000)원

나. (을)은 이 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본 매매계약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(갑)의 임치금 보관금 계

좌(하나은행 106-910054-48504 예금주 : 파산채무자 뷰티그랩의 파산관재인 김의창)에 온라인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단, (을)은 이 건 계약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약정 지급기한 이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매매대금을 (갑)에게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.

제3조 (권리 이전 및 비용부담)

가. 제6조 가.항에서 정한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의 허가를 득한 후 (을)이 제2조에서 정한 매매(양도·양수)대금 지급을 전부 이행한 경우, 이 건 매매(양도·양수) 목적물을 (을)에게 이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반 서류를 (갑)이 (을)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건 계약에 의한 (갑)의 의무가 전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나. (갑)은 이 건 매매(양도·양수)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양도통지 권한 및 채권양도 통지를 위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 신청행위에 대한 권한을 (을)에게 위임한다.

다. 이 건 매매(양도·양수)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권양도통지 등 권리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(을)의 부담으로 한다.

제4조 (계약해제 등)

가. (갑)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(갑)은 이미 수취한 매매(양도·양수)대금을 이자 없이 (을)에게 반환하는 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나. (을)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(갑)이 이미 수취한 매매(양도·양수)대금은 위약금조로 (갑)에게 귀속된다.

다. (을)은 이 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(갑)이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로 한다.



제5조 (하자담보책임 등)

(을)은 이 건 매매(양도·양수) 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범적, 사실적 관계를 조사하고 이 건 계약 체결에 임하는 것이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(갑)은 책임지지 않으며, (을)은 이를 이유로 (갑)[파산관재인 개인에 대하여도 같다] 또는 이 사건 파산재단을 상대로 이 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다(부채소 합의).

- (1) 양도목적물의 존부, 멸실(일부 멸실 포함), 수량의 차이 등의 상이
- (2)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받는 권리의 제한
- (3) 양도목적물의 표시내용과 현상과의 차이
- (4) 매매대상 채권의 채무자의 무자력 기타 제반 사유로 인한 추심 또는 집행의 불능, 지연, 장애 등

제6조 (정지조건 등)

가. 이 건 계약은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의 허가를 계약 효력발생조건으로 한다. 만약 (갑)이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(갑)은 (을)로부터 받은 매매(양도·양수)대금을 이자 없이 반환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한다.

나. 이 건 계약에 터 잡은 소송상 청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한다.

2026. 5. 7.

매도(양도)인(갑)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뉴디그랩의 파산관재인 김의창



매수(양수)인(을) 주식회사 타임투자금융대부

사내이사 김 춘 구 (인)



채권양도양수 통지 위임장

수임자: 주식회사 타임투자금융(140111-0059095)

강원도 춘천시 춘천로185번길 16-6, 4층(운교동, 타임투자금융빌딩)

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

- 다음 -

위임인은 하기 채권내역에 대한 채권의 권리자(채권자)로서, 양수인과 하기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금일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바,

1. 양도인으로서 양도, 양수 통지서의 작성 및 발신에 관한 의무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한다.
2. 위 수임자는 통지서 발신에 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없다.

※ 채권 내역

채무자	금액(원)	채권의 종류	비고
한지희	856,793,770원	손해배상청구권	인천지방법원 2025고합125, 2024고합 202(병합) 피고인임/ 동종 유사 혐의 병합 기소/특별한 재산 없고 신용상태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24. 1. 물품 제공 의사 표시로 선급금 명목 편취혐의로 기소(기소 피해액:856,793,770원)/형사판결 결과에 따라서 채권 존부 및 채권액 변경 가능성을 유의하시기 바람

2026. 05. 07 기명날인(서명)됨.

파산자 주식회사 뷰티그램

파산관재인 변호사 김 의 창

